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골 목 경 제 과

구미시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단순 디자인·시설개선이 아닌 구미의 자원, 문화, 사람, 스토리 등 지역성을 제품과 공간에 구현하여 차별화된 로컬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시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

나)「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

다)「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2조

(2) 필요성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 도입 초창기부터 사업을 운영해 온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관련 경험과 운영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운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구미시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 업무 전반

라. 위탁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마. 위탁기간 : 2027. 1. ~ 2027. 12. (1년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80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계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	비고
800	570.2	69.8	160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일자리경제과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의결('26. 9. 28.)

3. 부서의견

○ 로컬팩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7조

(2)「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3)「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4)「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 편성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와 협업화 지원
4. 휴·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5.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7. 소상공인 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 시장은 제4조 및 제11조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단체·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구미시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 위탁 시 사업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사업비는 연간 사업량 및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함

나. 인건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사업비	570.2	570.2	570.2	570.2	570.2	2,851
	○간접비	69.8	69.8	69.8	69.8	69.8	349
	○인건비	160	160	160	160	160	800
	계	800	800	800	800	800	4,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800	800	800	800	800	4,000
민 간						
기 타						
합 계	800	800	800	800	800	4,000

5. 부대의견 :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

6. 작 성 자 : 골목경제과 로컬성장지원팀 김연욱(☏480-261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목	세 목	예 산	세부 산출내역
인건비 (20.0%)	참여 인력 인건비	160,000	▪ 참여인력 내부 인건비 - 160,000천원
직접비 (71.3%)	사업화자금 지원비	400,000	▪ 소상공인 사업화자금 지원비 - 패키지형 : 20,000천원 × 10개소 = 200,000천원 - 플레이스형 : 20,000천원 × 10개소 = 200,000천원
	교육 및 멘토링비	7,200	▪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비 - 1:1멘토링 : 300천원 × 20회 = 6,000천원 - 역량강화 집체교육 : 600천원 × 2회 = 1,200천원
	마케팅 지원비	150,000	▪ 로컬팩 마케팅 지원(국내외 팝업전 등) - 75,000천원 × 2회 = 150,000천원
	사업홍보 및 네트워킹비	13,000	▪ 사업 홍보 및 네트워킹비 - 홍보·마케팅 : 8,000천원 × 1회 = 8,000천원 - 네트워킹 : 5,000천원 × 1회 = 5,000천원
간접비 (8.7%)	전문가 활용비	9,000	▪ 선발심사 및 운영위원회 평가위원 수당 - 300천원 × 5명 × 6회 = 9,000천원
	회계 정산비	2,000	▪ 사업 회계정산비 - 2,000천원 × 1회 = 2,000천원
	국내여비	900	▪ 사업 수행관련 국내여비 - 10천원 × 5명 × 18회 = 900천원
	국외여비	5,400	▪ 사업 수행관련 국외여비 - 1,800천원 × 3명 = 5,400천원
	사무관리비, 회의추진비 등	3,500	▪ 사무관리비, 회의추진비 등 기타 1식 = 3,500천원
	연구수당	16,000	▪ 참여인력 연구수당 - 16,000천원
	기관운영경비	33,000	▪ 운영기관 간접경비 - 33,000천원
합계		**800,000**	-

소 관 부 서		골목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박 영 희
	팀 장	배 미 영
	담 당 자	김 연 욱 (480-2613)